



II 법 적용 요건 적용범위

1 공급안정 사업재편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과잉공급 판단 기준

- 표준산업분류 3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로 판단
- 업종이 조건1 또는 조건2를 만족하는 경우, 과잉공급으로 인정

※ 과잉공급 해당 여부는 기업이 축소 예정인 사업부문 관련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통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

조건 1

구분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보조지표	5개 중 (제조업) 2개 이상 만족, (제조업 이외) 1개 이상 만족
↳ 가동률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재고율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 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 가격·비용변화율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 생산지수	최근 3년의 가격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 업종별 지표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한 상태
지속성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조건 2

구분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해당 업종의 최근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상태
보조지표	5개 중 (제조업) 2개 이상 만족, (제조업 이외) 1개 이상 만족
↳ 가동률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 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 재고율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음수 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작은 상태
↳ 가격·비용변화율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4분기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상태
↳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 생산지수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 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 업종별 지표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지속성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참고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

제4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확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판매·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항
- ②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 과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작은 상태
 - 다. 가격·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4분기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 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의 과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산업·기술주기, 경쟁국 투자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 상태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가 등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2)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공급망 위협 판단 기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해당 품목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해당 품목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해당 핵심 자원

※ 사업재편 계획서 제출 후 공급망 위협 판단 확인 가능

**참고 ① 적용범위(기활법 제4조1항제1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급안정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을 하는 사업재편

참고 ② 공급망 위협 해소 적용범위(기활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 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해당 품목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의 대상이 된 품목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핵심전략기술이 적용된 품목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 품목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4호의 경제안보품목

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핵심자원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망 안정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국내 생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물류 개선 또는 보관·저장시설 확대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대체품목 개발 및 생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대체기술 개발

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특정 국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변경 또는 다원화

참고 ③ 공급망 위협 해소 적용대상(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5조의2)

제5조의2(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 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하려는 품목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 부처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